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, 지역주민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마련, 휴관일 지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자연휴양림 가동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시설이용 시간 개정(안 제5조)
○ 입장료 징수조항 삭제(안 제6조, 별표1)
○ 시설사용료 감면 및 면제기준 마련(안 제8조, 별표2)
○ 휴관일 지정 신설(안 제13조)
○ 입장료 용어 삭제 및 기타 용어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산림문화.휴양에 관한 법률」제21조의5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다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40600(2018. 7.17.)〕
라.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〔기획감사실-5230(2018.7.18.)〕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 (예고기간 : 2018. 7.20.~2018. 8.10.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동안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입하는 것으로써

○ 그 동안 징수했던 시설입장료를 없애고 국가유공자 및 취약계층, 지역주민에 대한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휴관일을 지정하는 등 지역주민 및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공실 최소화를 통한 시설 가동율 제고 등 시설운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